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307호
- 나. 제안자 : 송재혁 의원 외 12명
- 다. 제출일자 : 2018년 12월 31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1월 7일

2. 제안이유

-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방법을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화와 함께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시정에 대한 관심 유발 및 시정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 나.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공개된 사례를 취합한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정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예산낭비신고 제도의 운영 현황

- 서울시는 「지방재정법」(이하 ‘법’) 제48조1)에 근거해 2001년부터 예산성과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 온라인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2)를 운영하고 있음.
- 신고센터는 접수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와 유관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고성과금3)을 지급하고 있음.

1) 「지방재정법」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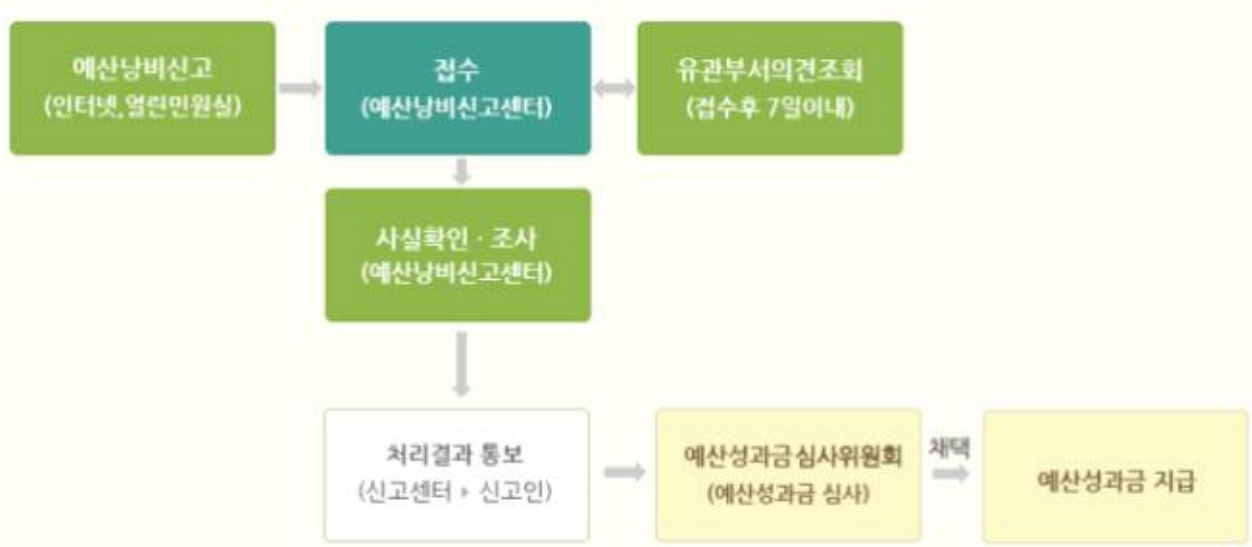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예산낭비신고제도 사이트(<http://yesan.seoul.go.kr/yw/yw0101.do>)

3) 신고성과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최대 건당 1억원이내, 1인당 2천만원 이내의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음.

<예산낭비신고 및 처리 절차>



- 서울시는 예산낭비사례 신고자를 시민과 서울시 공무원으로 각각 구분해 선정하며, 공무원의 경우는 예산절약, 창의성 및 노력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신고센터에 따르면, 시민 신고(2007년~2018년)의 경우 우수사례 총 246건에 4,612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되었고, 공무원 신고(2001년~2018년)의 경우 우수사례 총 771건에 38억 5,5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되었음.
- 이 같이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시민 참여가 부족한 반면, 공무원에게 성과금이 집중되고 있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의 공개 방법 변경(안 제5조)

-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는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 부여와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2016년 1월에 제정되었음.
- 조례에서는 예산절감 사례,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등을 공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제2조).
- 또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3조), 서울시는 지금까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집을 발간한 바가 없으며 신고센터 홈페이지의 우수사례 공개로 대신하고 있어 조례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표> 최근 5년간 신고 우수사례 선정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시민 신고 우수 사례	선정건수	19건	12건	8건	12건	13건
	신고포상금	750만원	543만원	190만원	596만원	415만원
공무원 신고 우수 사례	선정건수	45건	30건	40건	33건	33건
	신고포상금	2억 9,377만원	1억 7,400만원	1억 2,600만원	1억 850만원	9,390만원

- 이에 개정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를 취합한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공개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공개방법을 현행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우수사례 공개 방식만으로는 홍보 효과가 미흡하므로 사례집 발간 등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담당조사관	연락처
김성만	02) 2180-8055

〈붙임자료〉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1. 예산절감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③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5.10.8.>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행한다.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개인과 조직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③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1.7.>

제7조 삭제 <2016.1.7.>